

##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22.

보건복지부 장관

### 1. 재지정 신청 기간

○ 신청일정

구 분	접수기간	대상시설 수	비고
제1차	2019.1.28.(월) ~ 2019.2.1(금)	7개소	대상시설 : 붙임 1
제2차	2019.4.22.(월) ~ 2019.4.26.(금)	17개소	
제3차	2019.7.29.(월) ~ 2019.8.2.(금)	18개소	
제4차	2019.10.14.(월) ~ 2019.10.18.(금)	21개소	

\* 접수기간 등은 추후 업무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가능

\* 접수마감 : 각 회차 마지막 날 18:00시까지

## 2. 재지정 대상

- 2019~2020.2월 기간 중, 유효기간(3년) 만료 예정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붙임1)
- 재지정 심사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심사만 실시
  - 재지정심사 대상 생산시설이 품목추가가 필요한 경우, 재지정심사  
신청과 별도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계획  
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8-710호, 2018.11.22.)」에 따라 품목추가에  
따른 심사를 신규지정 신청해야 함

## 3. 신청방법

- 재지정심사 신청 대상시설은 반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접수 불가

### ※ 참고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및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 첨부, 누락 혹은 제출 거부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4. 심사기관, 대상 및 방법 등

- (심사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여부는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최종 심의·결정
- (심사대상) 기 지정되어 있는 생산시설(붙임1) 중 '19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을 한 시설 및 단체
- (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붙임1)
  - 단, 본 지정심사 계획 공고 후 법령·고시·지침 등 개정 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실시
  - \* 서류심사결과, 적합 생산시설에 한하여 현장심사 실시
  - 보건복지부 및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재지정 심사와 관련한 현장심사는 사전예고 없이 실시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지정종료의 경우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지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단, 재지정 심사과정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 위반 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절차(청문 등)를 진행하여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등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 지정 시 '1년 지정 제한 규정' 적용

## 5. 재지정 시 유효기간

○ 지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년

- “부적합” 생산시설은 부적합 사유서와 함께 지정 유효기간 종료 통보

\* 단, 재지정 심사과정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 위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시설에 대해 지정 유효기간 연장 후 별도의 행정처분절차(청문 등)를 진행하여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등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 지정 시 ‘1년 지정 제한 규정’ 적용

## 6.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044-202-3322/3324, Fax : 044-202-3962)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 : 02-3433-0734, 0765, 0635, 0726, 0776, 0781, 0787, 0784, 0715, 0633, 0693, Fax : 02-416-9569, 9565)

연번	지정번호	시설명	지정품목	유효기간		신청 차수
				시작일	종료일	
1	2016-020	행복한나무	문서파일류, 인쇄물, 재생토너카트리지	2016.04.14.	2019.04.13.	<u>1차</u>
2	2016-021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인쇄물, 판촉물인쇄	2016.04.14.	2019.04.13.	
3	2016-022	종로행복일굴터	택배	2016.04.14.	2019.04.13.	
4	2016-023	사)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환경사업단	청소	2016.04.14.	2019.04.13.	
5	2016-024	사)한국장애인녹색재단 녹색섬유사업단	피복류	2016.04.14.	2019.04.13.	
6	2016-025	고양시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원	PE봉투(비닐봉투류)	2016.04.19.	2019.04.18.	
7	2016-027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복지사업본부	배전반·제어장치, 조명기구, 청소	2016.04.26.	2019.04.25.	
8	2016-029	라피드보호작업장	가스차단기, 전자서명처리기	2016.07.05.	2019.07.04.	<u>2차</u>
9	2016-030	진주시직업재활센터	인쇄물, 현수막	2016.07.05.	2019.07.04.	
10	2016-031	사)곰두리봉사협회 장애인자활자립장	사무용지류, 조명기구	2016.07.05.	2019.07.04.	
11	2016-032	고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청소	2016.07.05.	2019.07.04.	

연번	지정번호	시설명	지정품목	유효기간		신청 차수
				시작일	종료일	
12	2016-033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	소독방역	2016.07.05.	2019.07.04.	2차
13	2016-034	이화보호작업장	사무용지류	2016.07.05.	2019.07.04.	
14	2016-035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사업본부 기전사업소	배전반·제어장치	2016.07.05.	2019.07.04.	
15	2016-036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농산물가공품, 초	2016.07.05.	2019.07.04.	
16	2016-037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인쇄물, 현수막	2016.07.05.	2019.07.04.	
17	2016-038	WELCO	견과류, 제과제빵, 종이컵	2016.07.05.	2019.07.04.	
18	2016-039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월가든사업단	화훼류	2016.07.05.	2019.07.04.	
19	2016-040	담쟁이장애인보호작업장	면류	2016.07.05.	2019.07.04.	
20	2016-041	해인장애인보호작업장	폴리에틸렌(PE)관	2016.07.05.	2019.07.04.	
21	2016-042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피복사업단	피복류	2016.07.05.	2019.07.04.	
22	2016-043	사)꿈드래장애인일자리센터	문서파일류, 사무용지류	2016.07.05.	2019.07.04.	
23	2016-045	스롤라인	화훼류	2016.07.05.	2019.07.04.	
24	2016-046	베데스다직업재활원	단추, 채소류	2016.07.05.	2019.07.04.	

연번	지정번호	시설명	지정품목	유효기간		신청 차수
				시작일	종료일	
25	2016-047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용지류, 인쇄물	2016.10.11.	2019.10.10.	<u>3차</u>
26	2016-048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재생토너카트리지	2016.10.11.	2019.10.10.	
27	2016-050	사)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경관조명사업본부	교통신호등, 조명기구	2016.10.11.	2019.10.10.	
28	2016-051	소망자립센터	세탁	2016.10.11.	2019.10.10.	
29	2016-052	사)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누리피복사업단	피복류	2016.10.11.	2019.10.10.	
30	2016-053	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제공지 원협회(동대구지사)	인쇄물	2016.10.11.	2019.10.10.	
31	2016-055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인쇄물, 현수막	2016.10.11.	2019.10.10.	
32	2016-057	한아름직업재활센터	인쇄물, 판촉물인쇄	2016.10.11.	2019.10.10.	
33	2016-058	행복한집	망사포대	2016.10.11.	2019.10.10.	
34	2016-060	주라꿈터	커피류	2016.10.11.	2019.10.10.	
35	2016-061	포이에마장애인보호작업장	개인컴퓨터	2016.10.11.	2019.10.10.	
36	2016-062	사)한국사회적일자리개발원 아이씨티사업단	CCTV, 개인컴퓨터,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2016.10.11.	2019.10.10.	
37	2016-063	메아리보람의터	커피류	2016.10.11.	2019.10.10.	

연번	지정번호	시설명	지정품목	유효기간		신청 차수
				시작일	종료일	
38	2016-064	요셉행복일터	버섯류, 소독방역	2016.10.11.	2019.10.10.	<u>3차</u>
39	2016-065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세탁	2016.10.11.	2019.10.10.	
40	2016-066	다니엘의집	농산물가공품	2016.10.11.	2019.10.10.	
41	2016-067	미래직업재활원	제과제빵	2016.10.11.	2019.10.10.	
42	2016-068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아이씨티사업소	CCTV, 구내방송장치, 동보장치	2016.10.14.	2019.10.13.	
43	2016-069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포류	2016.12.29.	2019.12.28.	<u>4차</u>
44	2016-070	사)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디지털사업단	CCTV, 보행자감지기, 청소	2016.12.29.	2019.12.28.	
45	2016-071	사)장우전기	배전반·제어장치, CCTV	2016.12.29.	2019.12.28.	
46	2016-072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단 한들	인쇄물	2016.12.29.	2019.12.28.	
47	2016-073	화성시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종이상자	2016.12.29.	2019.12.28.	
48	2016-074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견과류	2016.12.29.	2019.12.28.	
49	2016-075	사)우리들행복나눔 종합가구사업단	가구류	2016.12.29.	2019.12.28.	

연번	지정번호	시설명	지정품목	유효기간		신청 차수
				시작일	종료일	
50	2016-076	충북재활원보호작업장	제과제빵(직접판매만 가능)	2016.12.29.	2019.12.28.	4차
51	2016-077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사무용지류, 인쇄물	2016.12.29.	2019.12.28.	
52	2016-079	아나올장애인보호작업장	소독방역	2016.12.29.	2019.12.28.	
53	2016-080	성분도보호작업장	도자기	2016.12.29.	2019.12.28.	
54	2016-082	신아보호작업장	제과제빵	2016.12.29.	2019.12.28.	
55	2016-083	지심엘앤씨	CCTV, 조명기구	2016.12.29.	2019.12.28.	
56	2016-084	근로복지원	사무용지류, 배전반·제어장치	2016.12.29.	2019.12.28.	
57	2016-085	사)한국장애인정치포럼 산전사업단	배전반·제어장치	2016.12.29.	2019.12.28.	
58	2016-086	보라매보호작업장	소독방역, 청소	2016.12.29.	2019.12.28.	
59	2016-087	희망자리	CCTV, 인쇄물, 현수막	2016.12.29.	2019.12.28.	
60	2016-088	희망일터	곡류	2016.12.29.	2019.12.28.	
61	2016-089	공감플러스	커피류	2016.12.29.	2019.12.28.	
62	2017-001	굿데이	제과제빵	2017.01.26.	2020.01.25.	
63	2017-002	하늘보호작업장(하늘농장)	유지류, 버섯류	2017.02.02.	2020.02.0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시행 2016.6.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2016.6.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로 한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여부
5. 중증장애인이 최종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생산시설 명의의 제품으로 포장 또는 표시하여 판매할 것. 단, 제품의 특성상 해당 생산시설 명의로 포장 또는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붙임>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① 제2조제1항제4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임차 제외)하고 있거나,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될 것

**제4조(직접생산 확인증명)**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5조(품목에 따른 중증장애인가용요건의 특례)** 영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 청사관리, 공공시설관리, 기타 공공기관이 행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청소용역,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서비스
2. 불법행위단속, 행사진행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16호, 2016.6.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 1. 신청자의 적격성

가.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한다.

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를 주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해당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수익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가. 장애인근로자 등의 정의

1) “장애인근로자”란 신청일 기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영업직 등의 직원은 제외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②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전체 근로자”란 생산시설의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서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의 전부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4.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직원 및 일용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중증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 ② 뇌병변장애인(1~3급), 심장장애인(1~3급)
- ③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 ④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3급)
- ⑤ ③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3급)

4) 2)의 “일용근로자”란 생산시설의 전체 근로자만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납기일 준수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지급 내용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고용연월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 포함), 출·퇴근기록부, 기타 관련 결재서류(임금지급 기안문서, 채용 기안문서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6)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생산시설 외의 타 업체 등에 근로 또는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타 업체 소속 임직원이 동 생산시설의 생산·영업 등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겸직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7) 생산시설에서 제시된 근로자 외의 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원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

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충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

1)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장애인근로자/전체근로자) × 100%

②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근로자/장애인근로자) × 100%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계약 시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1) 사업장의 대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

가.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 공정 참여율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전체근로자 근로시간) × 100%

나. ‘가’의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가. 직접생산의 정의

1)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동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직접 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생산 공장

- 1) 해당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으로 확인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이유로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한다.
- 2) 생산 공장의 협소로 인해 설립승인 지역 내 생산 공장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여부 등 관련 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 3) 생산 공장의 실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명칭이 생산시설 명의임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 4)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운영법인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거나,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생산시설에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해당 생산시설이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⑤ 타 업체의 사무실 또는 공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시설이 타 동종 업체의 공장 또는 사업장 내부에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
  - ⑥ 생산공장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생산공장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타 업체의 제2공장 또는 지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5)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생산시설의 소유로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6)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 7) 사업자등록증명상 '업태' 및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해당 품목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다.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 1)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 2)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소재지에 동 설비가 설치 및 가동이 되어야 하고, 생산시설 명의의 구입에 따른 증빙서류,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비임이 증빙되어야 한다.
- 3)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보증금 등재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③ 생산설비를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생산설비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⑤ 생산설비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생산설비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
- 4)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 및 생산시설 재무제표 등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5) 생산설비 가동 여부는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수주물량 미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시 생산설비의 가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라. 전문기술인력

- 1) 해당 품목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동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서 정한 생산인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전문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는 생산시설의 대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정상적인 임금지급내역, 생산 과정에의 참여여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 보유 여부, 생산설비의 취급가능 여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전문기술인력을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마.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 1) 생산시설의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하고 있는지 여부가 생산 공정별로 현장 확인되어야 한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수불관리대장, 매입장, 지출기안, 대금지급 통장 내역, 외주가공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를 생산시설 명의로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생산품 재고관리, 판매관리, 매출장, 생산일지, 수입기안, 수입대금 통장내역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로 생산시설의 명의로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생산·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직접 생산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 및 일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명의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운영법인 등과 생산시설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 바.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

- 1) 타 업체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품 등을 시설·설비 구축 및 가동 없이 단순히 조립 공정 등 노동력에 의존하여 완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해당품목의 제조·판매 등을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동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 3) 타 업체 등과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시설의 생산설비·작업장 등이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4) 생산시설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 정상적인 대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무상·임의지급 등은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 5) 생산품목별 납품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납품한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 6)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또는 포장지에 생산시설 명의로 제조·판매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의 특성상 생산시설 명의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